기후에너지환경부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2026. 3. 26.(목) 11:00 배포 2026. 3. 25.(수)

공공기관 차량 5부제 시행 강화… 모든 지방정부 대상 경차·하이브리드차도 포함

- 경차·하이브리드차 포함하는 등 기존 보다 더 엄격하게 시행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3월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중인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전국의 모든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보다 엄격하게 적용해 관리한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은 기존에도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관리를 기관 자율에 맡겨 사실상 의무를 이행하는 부담이 크지 않았다. 그러나 중동전쟁으로 인한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요일제) 시행은 원유 수급 상황이 불안정한 만큼 기존보다 대폭 강화되어 시행된다.

우선, 이번 승용차 요일제(5부제)는 공공기관의 공용차와 임직원의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기존에 제외되었던 경차와 하이브리드차도 5부제(요일제)에 대상이 된다.

물론 장애인 차량이나 유아동승 차량, 전기차·수소차와 대중교통이 열악한 원거리 지역에 거주하는 임직원은 기존대로 제외된다. 민간 시행이 자율인 만큼 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 차량도 적용되지 않는다.

둘째로 지방정부를 포함한 전국의 모든 공공기관에 일괄 적용된다. 기존에는 인구 30만명 미만의 시군에 위치한 공공기관의 경우 승용차 요일제를 시행하지 않을 수 있었지만, 이번 승용차 5부제(요일제)에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시군에 적용된다.

다만, 기관장이 대중교통이 열악하다고 판단되는 직원의 차량에 한해 제외차량으로 지정할 수 있다. 아울러 기존에는 승용차 운휴 요일을 선택하는 선택요일제 방식이 가능했으나, 이번 승용차 5부제(요일제)는 차량번호 끝자리로 운휴 요일이 지정되는 끝번호요일제만 시행된다.

세 번째는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요일제) 위반행위에 벌칙을 부과할 계획이다. 반복 위반자에 대해서는 기관 자체 징계 등을 취하도록 요청했다.

네 번째는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요일제) 시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유연근무를 권했다. 출퇴근시 대중교통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면 승용차 5부제(요일제) 시행의 실효성이 높아진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민간에도 자율적으로 승용차 5부제(요일제) 시행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를 통해 참여를 요청할 계획이다.

박덕열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소열산업정책관은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서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에너지 절약 실천이 중요하다”라며,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엄격하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 시행지침(요약). 끝.

담당 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안전효율과	책임자	과 장	양광석 (044-203-3984)
		담당자	사무관	한주영 (044-203-3981)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임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 시행지침(요약)**

※ 민간은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를 준용하여 기관별로 자율 시행

□ (시행방법)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끝자리 수에 따라 휴무요일 지정

유 형 별	5부제 운휴일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적용 제외
	월	화	수	목	금	
끝번호 5부제	1, 6	2, 7	3, 8	4, 9	5, 0	

□ (시행시기) 평일(월~금) 24시간, 토·일요일·공휴일 제외

□ (대상기관) 총 1,020개 공공기관*

* 중앙행정기관(205), 광역·기초지자체(243), 시·도교육청(17), 국·공립 대학 및 대학병원(61), 공공기관(328),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166)

□ (대상차량) 공공기관의 공용차 및 근무자의 승용차 약 150만 대

□ (제외차량) 취약계층, 특수상황 등으로 운행 감축이 어려운 차량 및 환경친화적 차량

취약계층	장애인 사용 자동차(국가유공자 차량, 장애인 동승 포함)
	임산부·유아(미취학 아동) 동승차량
대중교통 미흡	대중교통 열악지역 또는 장거리(30km 이상) 출퇴근 차량
	대중교통 미운행 시간에 출퇴근하는 차량
환경친화	전기·수소차
기타	그 외 기관장이 운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차량

□ (시행주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차량 5부제 시행 총괄

○ (중앙행정기관) 정부청사관리소에서 청사 승용차 5부제 대상차량 출입통제, 각 부처는 소속기관·산하기관 승용차 5부제 지도·감독

○ (지방정부·교육청) 소관 청사의 승용차 5부제 시행 및 국공립 초중고를 포함한 소속·산하기관 지도·감독

○ (공공기관 등) 승용차 5부제 시행 및 자회사·유관기관 등 감독

□ (시행요령) ▲승용차 5부제 시행계획 수립, ▲주차관제시스템 등을 활용한 출입 차단 및 자체점검 실시, ▲차량공유 활성화 및 출퇴근 지원 방안 마련 등

○ 위반차량에 대해 위반사항 통지 후 조치요령에 따라 조치, 월간 조치결과를 시스템에 등록